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3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4. 10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범위의 제한이 없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조항을 완화 및 폐지하여 행정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“제3조(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)” 관련 조항 개정

새주소로 정정 및 “태양광발전소 관련시설 제외” 추가

나. “제6조(위탁)제4항” 신설

- 위탁의 취소(협약해지)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다. “제7조(위탁신청)제1항제7호” 삭제

-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·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제23조(위탁의 취소 등) 삭제

- 신설되는 “제6조(위탁)제4항” 준용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
지방자치법 제22조, 제10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성별·부패영향평가 : 특이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4. 8. 27. ~ 2014. 9. 17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종합유통센터의 명칭등) 종합유통센터의 명칭·위치는 다음과 같다.

명칭	위치	비고
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	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9	물류창고 포함 태양광발전소 관련시설 제외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탁의 취소(협약해지)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『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』를 준용한다.

제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(이 조례 시행 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경우는 제외)의 위탁의 취소(협약해지)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직전 조례 제23조에 의한다.

신.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종합유통센터의 명칭등) 종합유통센터의 명칭.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명칭</th> <th rowspan="2">위치</th> <th colspan="2">면적(m²)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대지</th> <th>건물 연면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</td> <td>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5, 556-15, 556-24번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7,28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2,689.4</td> <td>물류창고 포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6조(위탁) ① ~ ③ (생략) ④ <신 설></p> <p>제7조(위탁신청)① 종합유통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·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 7. <u>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.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제23조(위탁의 취소 등) ①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.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	명칭	위치	면적(m ²)		비고	대지	건물 연면적	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	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5, 556-15, 556-24번지	37,289	22,689.4	물류창고 포함	<p>제3조(종합유통센터의 명칭등) 종합유통센터의 명칭.위치는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>명칭</th> <th>위치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</td> <td>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9</td> <td>물류창고 포함 태양광발전소 관련시설 제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6조(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탁의 취소(협약해지)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『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』를 준용한다.</p> <p>제7조(위탁신청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	명칭	위치	비고	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	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9	물류창고 포함 태양광발전소 관련시설 제외
명칭			위치	면적(m ²)		비고													
	대지	건물 연면적																	
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	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5, 556-15, 556-24번지	37,289	22,689.4	물류창고 포함															
명칭	위치	비고																	
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	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9	물류창고 포함 태양광발전소 관련시설 제외																	

참고 1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(종합유통센터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,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

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
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
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
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